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111

提出年月日: 1992. 10. 提 出 者:大田直轄市長

1. 提 案 事 由

- 公園管理業務의 主要業務인 綠地造成 및 管理業務의 專門性을 提高하여 公園管理 事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公園 管理事務所長의 職列을 調整하고.
- ㅇ 公園內에 設置된 體育施設 利用에 관한 適用 條例가 '91.12.13 "大田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條例"에서 "大田直轄市 體育 施設管理 運營條例"로 改正 되었으므로 公園内에 設置된 體育 施設利用에 관한 適用 條例名을 改正코자함.

2. 主要骨予

- 가. 現在 "地方行政事務官"으로 되어 있는 所長의 職列을 "地方 行政事務官 또는 地方林業技佐"로 調整(案 第4條)
- 나. 公園內에 設置된 體育施設 利用에 관한 適用 條例名을 "大田 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條例"에서 "大田直轄市 體育施設 管理 運營 條例" 呈 變更(案 第6條)

3. 參考事項

가. 公園管理事務所 現況

· 設置 年月日: 1986. 12. 30(條例 제1523號) · 管理 公園數 및 面積:3個 公園(6,870千坪)

- 보 문 산 公園: 4,772千坪 - 가 양 公 園: 423千坪 - 세천 어린이公園 : 1.725千坪

나. 他 直轄市와의 比較

區分	轄市別	大	⊞	釜	Ш	大	Бß	仁	JII	光	州
公園管理 事務所數		1		4		4		1		4	
管理公	園面積	6,870)천평	2,619	9천평~	14,95	4건평	882	천평	9,634	천평
所 (職	長 級)	행정	5급	oy . ∙			5급 의5급	∌]. ⟨	임5급	행정4	글,5급

다. 關聯 條例 改正內容

○ "大田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 條例"가 '91. 12. 13 "大田直轄市 體育施設管理 運營條例(條例 第2178號)"로 改正

0	
≺	
.,	

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제1항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기좌"로 한다.

제6조중 "대전직할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"를 "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"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조 표

	T			
현 행		7 }	정	. 안
제4조(소장) ① 사무소에 소장을 두	며	제4조(소 장) ①)	
"지방행정사무관"으로 보한다.	. • !	"지방행정사	무관 또는 지	방임업기좌"
		로	, ~	*
제6조(사용료) 공원내에 설치된 채유	F시설	제6조(사 <mark>용료)</mark>		
은 "대전직할시 체육 시설사용료징수	조례"	- "대전직할] 시 체육 시설관	리운영조래"
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	다.			
*		×		e. T
		36		8
in the second se				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1			R

大田直轄市 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審査報告書

1992 . 10 .

內 務 委 員 會

大田直轄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2 年 10 月 24日 內 務 委 員 會

I. 審 杳 經 過

1. 提出日字및 提出者: 1992年 10月 15日, 大田直轄市長

2. 回 附 日 字:1992年10月16日

3. 上 程 日 字:第15回 大田直轄市 議會(臨時會)

第1次 內務委員會(1992年 10月 21日)

上程,審議,議決

Ⅱ. 提案說明 要旨(提案說明者:企劃擔當官)

- 1. 提 案 理 由
- 公園管理業務의 主要業務인 緑地造成 및 管理 業務의 専門性을 提高하여 公園管理 事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公園 管 理事務所長의 職列을 調整하고,
- 公園內에 設置된 體育施設 利用에 관한 適用 條例가 '91. 12. 13"大田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條例"에서 "大田直轄市 體

育施設管理運營條例"로 改正되었으므로 公園內에 設置된 體育 施設利用에 관한 適用 條例名을 改正코자 함.

2. 主要骨子

- 가. 現在 "地方行政事務官"으로 되어 있는 所長의 職列을 "地方 行政事務官 또는 地方林業技佐"로 調整 (案 第4條)
- 나. 公園內에 設置된 體育施設 利用에 관한 適用 條例名을 "大田 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條例"에서 "大田直轄市 體育施 設 管理運營條例" 呈 變更 (案 第6條)

Ⅲ. 專門委員 檢討要旨 (專門委員 鄭 泰 益)

本 案件은 大田直轄市의 公園管理를 보다 效率的으로 遂行하고 關 聯 緑地 業務에 専門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公園管理業務를 總括하고

있는 所長의 職列을 現行"地方行政事務官"에서"地方行政事務官 또는 地方林業技佐"로 調整(案 第4樣)하고. 公園內에 設置된 體育

施設利用에 관한 適用 條例名을 "大田直轄市 體育施設 使用料 徵收 條例"에서 "大田直轄市 體育施設 管理運營 條例"로 그 名稱을 變 更하는 內容임.

本 公園管理 事務所는 '86年 12月 30日 設置이래 地方行政事務官을 所長으로 하는 體制로 運營하여 왔음.

公園管理業務는 그 性質上 特殊性과 緣地 管理에 따른 技術的인 事 項等 一般 行政과는 相異한 面이 있다고 하겠음.

따라서 公園內의 施設 維持와 樹木의 直裁 管理等 業務에 보다 專門 化를 期하기 위해서는 이를 總括 管理하는 所長의 職列에 林業 分野 를 導入하는 것은 必然的인 事項이라 思料됨.

Ⅳ. 討論要旨

- 行政職 및 林業職의 複數 職列 必要性
- o 公園管理 實態
- o 他 公園의 向後 管理 計劃

V. 質疑 및 答辯 要旨

質 疑 要 旨	答 辯 要 旨
環境綠地局에 林業職 人力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調整하는 것은 現 所長의 職 列을 林業職으로 하기위한 것이 아닌지	○ 他 市道 複數職化되고 있음. ○ 技術的 業務를 要하기 때문이며, 綠地 業務의 重要性이 대두됨에 따라 全體的 인 趨勢에 따른 것임.
○ 複數職으로 調整하는 理由	○ 市 綠地課長과 同一하게 하여 業務 協助 體制를 圓滑히 하기 위함.
○ 年 3個月程度 勤務하는 산불豫防 人力을 常勤職으로 하여 生活 安定에 圖謀할 수 없나	ㅇ 關聯 部署와 協議 積極 檢討하겠음.

答辯要旨 質疑要旨 o 體育施設 使用料 徵収 條例가 '91年 12 o 時期上 잘못된것임. 月에 名稱이 改正되었는데 현재와서 本 向後 是正 改善할 것임. 條例是 改正하는 理由는 o 復數職列의 長短點은 ο 長點 - 林業職의 士氣 振作에 寄與 o 短點 - 行政聯의 定數 縮小 豫想 o 復數 職列에 대한 必要性은 0 行政職의 잦은 轉補 移動 (6個月~1年) 에 비해 林業職(技術)은 長期的 勤務 期待(專門性 確保) o 계족山城의 管理 計劃은 o 문화재 地區로써 重要性은 認識하고 있 으나, G.B地域으로 公園 指定이 어려운 實情임. 環境管理分野에 있어서는 關聯部署의 協 議 積極 檢討하겠음.

Ⅵ. 審 杳 結 果:原 案 可 決

WI. 其他 必要한 事項: 없 음